# 경리인코너

# 공급가액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의 세금계산서 발행방법

상담실 백종훈 차장

일반적으로 사업자간의 거래는 사전에 거래가액을 확정하고 진행하게 된다. 하지만 이러 저러한 사정으로 인해 사전에 확정된 거래가액을 변경할 수 밖에 없는 경우도 생기는데, 거래 당사자가 거래가액의 변경에 대한 인식이 일치하여 아무런 다툼 없이 넘어가면다행이지만, 변경된 거래가액에 대한 거래당사자간의 인식 차이가 발생하여 다툼이 생기기도 한다.

거래가액에 대한 거래 당사자간의 다툼이 발생한 경우의 세금계산서 발행방법 등에 대하여 가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 재화공급가액에 대한 다툼이 있더라도 공급자는 우선 세금계산서 발행해야 함

상품이나 제품, 원자재 등 구체적 형태가 있는 재화를 거래하는 경우에는 거래가 시작되기 전에 미리 공급가액을 결정하고 또한 해당 재화의 시장가치가 급격하게 변동하지 않으므로 거래시에 공급가액에 대한 다툼이 많지 않다.

그럼에도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거래당사자간에 공급가액에 대한 다툼이 발생될 수 있는데, 이렇게 거래당사자간의 공급가액에 대한 다툼이 발생한 경우라도 공급자는 우선 재화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재화를 인도하거나 사용·소비하는 시점, 장기할부판매나 완성도 지급기준조건·중간지급조건 등의 경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재화의 공급 시기로 규정하고 있고, 거래 당사자간에 거래가액의 다툼이 발생했을 경우에 대한 예외적 공급시기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공급받는 자와 거래가액에 대하여 다툼이 발생했더라도 우선 재화의 공급시기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미발행 및 지연발행에 대한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또한 공급자가 거래 당사자간에 합의되지 않은 금액으로 발행한 세금계산서라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상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로 인정되므로,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 모두는해당 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반영하여야 한다.

추후 공급가액에 대한 다툼이 거래 당사자간의 합의나 법정 소송 등을 통해 종결되면, 처음에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재발행하는 것이 아니고, 합의일 또는 법원판결일

2022 · 11 · 23 www.eAnSe.com 9

을 작성일로 하여 최초 세금계산서 발행된 금액과의 차액만큼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된다.

#### ♣ 서삼46015-10818. 2002.05.17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그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하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그 공급가액 중 일부는 확정되고 일부가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공급시기에 확정된 금액만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확정되지 아니한 공급가액은 추후 확정되는 때에 그 확정된 금액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용역공급의 경우 역무제공완료 되고 공급가액 확정시점을 공급시기로 볼 수 있음

용역공급의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거나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하나,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거나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한다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9조제2항제1호가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용역이 공급되고 해당 용역공급에 대한 공급가액에 대한 다툼이 발생되는 경우 공급자는 역무의 제공완료 시점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거래 당사자간의 합의나 또는 소송결과를 기다렸다가 공급가액이 확정되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도 세무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

#### ♣ 서면3팀-1521, 2005.9.15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에 대하여 당사자간에 다툼이 있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대가가 확정되는 경우 당해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당해 대가가 확정되는 때인 것임.

하지만 용역공급자가 합의된 거래가액이 아닌 잠정가액으로 역무 제공 완료시점에 이미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면, 그 발행된 세금계산서도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로 인정되므로 해당 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반드시 반영하여야 한다.

추후 잠정된 가액으로 발행된 세금계산서에 대한 다툼이 거래 당사자간의 상호 합의로 변경되거나,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조정판결로 변경되면 최초에 발행된 세금계산서 가액 과 조정된 금액과의 차액에 대해서 합의일이나 판결일을 작성일자로 하여 수정세금계산 서를 발행하면 된다.

#### ♣ 부가가치세과-950, 2013,10,16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감액)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법원의 확정 또는 조정판결 받은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발급하는 것입니다.